

수해관련조사발의의견

의안 번호	19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1. 7. 18
발의자 : 유남열의원외7인

1. 조사의 목적

- 2001. 7. 15. 새벽 집중호우에 따라 우리구 관내에 4,139세대의 주택이 침수된 바, 하수관련시설인 빗물펌프장 가동상태 및 수문관리와 양수기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고
- 유사시 공무원의 비상근무상태 등 초기대응능력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.

2. 조사 사안의 범위

- 수해와 관련한 업무전반

3.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

- 수해관련조사특별위원회

4. 조사기간

- 2001. 7. 23(월) ~ 8. 4(토) - 13일간

수해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191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1. 7. 18
발의자 : 이종해의원외7인

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재난을 관리하는 각 부서의 대처 상황 등을 심층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2001. 7. 15일 새벽 집중호우에 따라 우리구 관내에 4,139세대의 주택이 침수된 바, 하수관련시설인 빗물펌프장 가동상태 및 수문관리와 양수기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고
- 유사시 공무원의 비상근무상태 등 초기대응능력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